

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발의부서 : 대학원교학처(대학원사무2팀)

1. 개정 사유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필수 지표 충족을 위해, 외국인 학생의 단순 동영상 강의 이수학점 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을 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에 명문화하여 인증 평가 대비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개정 내용

제54조(수강신청 학점의 제한)에 이어 제54조의 2(국내 체류 외국인 학생의 특례) 조항을 삽입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의 단순 동영상 강의 수강 학점을 제한

3. 해당(관련)부서 합의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안임

4. 신규 대비표

<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신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설)	제54조의 2(국내 체류 외국인 학생의 특례) 국내 체류 외국인 학생은 비대면 비실시간 동영상 100%로 구성된 과목을 해당 학기 총 이수학점의 30%까지만 이수할 수 있다.	
	부 칙<2000. 0. 00>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